【별지 제4호 서식】

보 안 서 약 서

본인은 방위사업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나는 정책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.

2.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방위사업 정책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정책자문 활동 중에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.

3. 나는 군사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위규시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.
 가. 군사기밀보호법
 나. 국가보안법 제4조(목적수행)
 다. 형법 제127조(공무상 비밀누설)
 라. 군형법 제80조(군사기밀 누설)

※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년 월 일

서약자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 성명 (서명)